

[무배당 당뇨이기는건강보험2004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무배당 당뇨이기는건강보험2004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 약관	상해사망	10년	전기납	30세~60세	월납 연납
	5대골절진단				
5대골절수술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 치료자금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당뇨병수술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말기신부전증진단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 약관	뇌출혈진단금				
질병사망					
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당뇨 유병자 전용 특별 약관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 금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 단금				
	(당뇨유병자)암진단금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 금				
	(당뇨유병자)당뇨병성발목이상 족부절단진단금				
	(당뇨유병자)질병실명진단금				
(당뇨유병자)질병사망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 ① 매 납입기일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이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자는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하, ‘BMI 할인’이라 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BMI할인확인일’의 다음 달의 납입회차부터 계속되는 12회차의 ‘BMI할인대상특별약관’에 대하여 각 영업보험료의 10% 할인이 적용됨(단, 보험료 납입 잔여 회차가 12회차 미만일 경우 잔여 회차에 한하여 ‘BMI 할인’이 적용됨)

가. 피보험자가 ‘BMI할인대상특별약관’ 중 한 개 이상 가입한 경우

나. 회사가 피보험자의 BMI가 25미만임을 확인한 경우

- ② ‘7.(1).①’에서 정한 ‘BMI할인대상특별약관’은 다음과 같음

※ BMI할인대상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특별약관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특별약관
- 당뇨병수술 특별약관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특별약관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특별약관
- 뇌출혈진단금 특별약관

- ③ ‘7.(1).①’에서 정한 ‘BMI 할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BMI가 25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BMI 제출서류’라 함)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BMI 제출서류’에 기재된 건강검진일은 ‘BMI할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나. 가목에서 정하는 ‘BMI 제출서류’는 건강검진결과(「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를 말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피보험자 성별
- 피보험자 생년월일
- 피보험자 신장
- 피보험자 체중
- 건강검진서 건강검진일

다. 회사는 가목에서 정하는 ‘BMI’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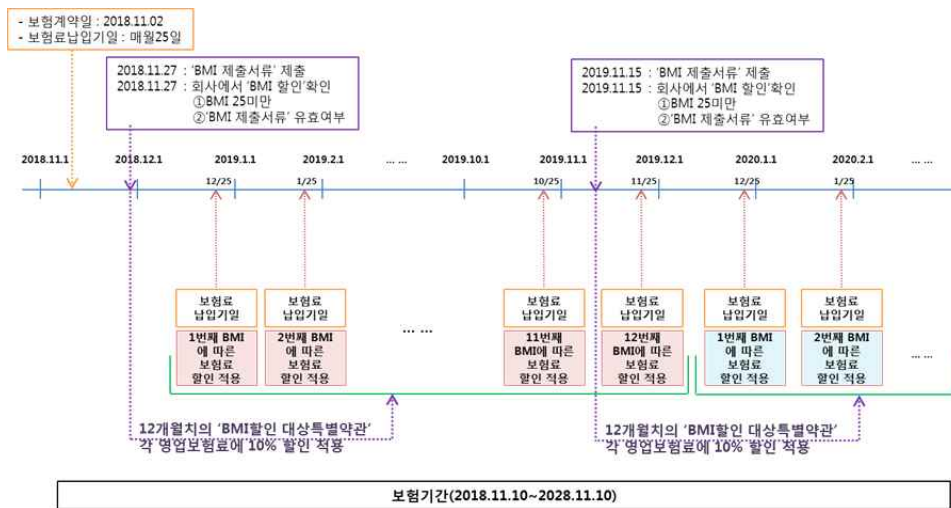
※ BMI 계산방식

$$BMI = \frac{\text{체중}(kg)}{(\text{신장}(m))^2} = \frac{\text{체중}(kg)}{\left(\frac{\text{신장}(cm)}{100}\right)^2}, \text{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 신장(cm)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키를 말함.
- 체중(kg) : ‘BMI제출서류’에 기재된 몸무게를 말함.

- (2) ‘BMI 할인’은 보험기간 내에 ‘7.(1)’을 충족 시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만약 ‘7.(1)’을 충족한 후 ‘BMI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 이후 연속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기 원하는 경우,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의 1개월 전부터」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까지」 ‘7.(1).③.나’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7.(1)’이 충족된 경우 12번째 납입회차의 다음달부터 계속되는 12회차에 ‘BMI할인대상특별약관’ 각 영업보험료의 10% 할인을 적용함.
 - 만약 ‘7.(1)’을 충족한 후 ‘BMI 할인’을 마지막으로 적용 받은 12번째 납입회차(납입일) 이후에 ‘7.(1).③.나’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7.(1)’에 따라 ‘BMI 할인’을 적용함.

[예시] ‘BMI에 따른 보험료 할인’



- (3) ‘7.(1).③.가’에서 정하는 ‘BMI할인신청일’이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회사에 ‘BMI 할인’에 대한 의사표시 한 후 ‘BMI 제출서류’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7.(1).①’에서 정하는 ‘BMI할인확인일’이란 회사가 ‘BMI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BMI 할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날을 의미함
- (4) 회사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무효, 소멸, 취소, 해지 시 “BMI 할인”을 중지함.
- (5) 선납보험료의 경우 ‘BMI 할인’ 적용이 제외됨.
- (6)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또는 특별부활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에는 ‘BMI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활 또는 특별부활 이후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7.(1).③.나’에서 정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7.(1).①’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7) 계약체결시 ‘BMI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계약체결, 이행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8) ‘7.(1)’부터 ‘7.(6)’까지 모두 충족하였어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BMI를 위조·변조한 경력이 있는 경우, ‘BMI 할인’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제한 사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BMI 할인’을 이미 적용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BMI 할인’을 취소하며, 그 때까지 ‘BMI 할인’에 따른 할인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 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당뇨병자 가입에 관한 사항

- (1) 당뇨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17.(2).당뇨병자의 정의'에서 정한 당뇨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2) 당뇨병자의 정의

※ 당뇨병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는 자 중에서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의무기록상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무작위-식후2시간혈당 200mg/dL 이상인 자
2. 당뇨병 치료제가 처방된 자
3. 담당 의사가 당뇨병 환자로 판단한 자

② 위 ①의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란, 분류번호 E10~E14(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함.

18. 기타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①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②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③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2)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인수심사에 활용하지 않음.
- (3)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4)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5) 기타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피보험자가 '17.(2).당뇨유병자의 정의'에서 정한 당뇨유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없음
- | |
|-------------------------|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금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금 |
|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후치료자금 |
| 질병입원일당(4일이상) |
| 당뇨병수술 |
| 만성당뇨합병증진단금 |
| 말기신부전증진단금 |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
| 뇌출혈진단금 |
| 질병사망 |
- ② 아래의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은 각각에 해당하는 기타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당뇨유병자 전용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당뇨유병자)중대한뇌졸중진단금	뇌출혈진단금
(당뇨유병자)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금
(당뇨유병자)말기신부전증진단금	말기신부전증진단금
(당뇨유병자)질병사망	질병사망

(6)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7)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